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외교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적 요인(테러리즘, 전쟁, 폭동, 경제위기 등)과 자연적 요인(지진, 전염병, 기후변화 등)으로 해외 위난이 다양화, 복합화되면서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외교부는 범정부 해외위난 대응체제로서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매뉴얼(국외테러 발생 시에는 국외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적용)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시행된 영사조력법령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현재 운영 중인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영사조력법령 체계 내에 법제화하여, 법령체계와 매뉴얼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해외위난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재외국민보호 대응태세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재외동포청 신설로 인하여 영사민원시스템 구축·관리총괄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3조 5항 상 규정되어 있는 영사민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 제6조상 규정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외교부장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시행령에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의 사용(안 제5조)

나.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도입(안 제17조의2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법제처 입안지원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영사민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작성·관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를 “작성·관리하고, 재외국민보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전항의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 제6조상 규정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외교부장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 등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범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외국민 생명·신체 또는 재산 피해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영사민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조(통합전자행정시스템의 사용) ① -----, 재외국민보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전항의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 제6조상 규정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외교부장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 설>	제17조의2(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 등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범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외국민 생명·신체 또는 재산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위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해외위난상황 등으로 인한 재외국민 피해발생 시 대응 총괄·조정

2. 상황 접수·전파, 대응 방향 결정

3. 위기경보 및 여행경보 조정 검토 및 결정

4. 신속대응팀 파견 검토 및 결정

5. 현장지휘본부에 지침 하달 및 지원

6. 피해자 지원 대책 강구

7. 피해자 가족 연락·지원

③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위기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위기상황판단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영사민원시스템”을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위난 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해외위난상황 등으로 인한 재외 국민 피해발생 시 대응 총괄·조정
2. 상황 접수·전파, 대응 방향 결정
3. 위기경보 및 여행경보 조정 검토 및 결정
4. 신속대응팀 파견 검토 및 결정
5. 현장지휘본부에 지침 하달 및 지원
6. 피해자 지원 대책 강구
7. 피해자 가족 연락·지원

③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위기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위기상황판단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금융정보등의 요청·제공 등) (중략)	제23조(금융정보등의 요청·제공 등) (중략)
⑤ 외교부장관은 금융정보등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영사민원시스템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⑤ ----- ----- 제5조에 따른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과 「사회보장기본법」 ----- ----- -.

/끝/